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구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보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나. 공공시설물 설치자의 관리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공공시설물 훼손자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마. 신고 및 처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바. 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사. 중복지원 금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아. 포상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자. 신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전화 : 02-3396-8166 FAX : 02)3396-9055, E-mail : kimjh82@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관리 의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 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사고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고장·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훼손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6조(지급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 1만원
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 3만원
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5만원

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처리 및 포상지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은 고장·파손 사실 및 공공시설물 훼손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요 공공시설물의 범위

(제2조 관련)

| 구 분 | 시 설 물 |
|--|--|
| 1. 도로 및 인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진입 방지 시설(경계석 등)○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관련 시설○ 육교○ 맨홀○ 벤치, 미디어폴 등 주민편익 시설○ 가로변 휴지통 등○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 |
| 2. 교 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라드 등 차량진입 방지 시설○ 교통 관련 표지판○ 교통 신호기 등○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관련 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 관련 시설물 |
| 3. 공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수 등 각종 수목 및 보호대○ 벤치○ 음용수대○ 공중화장실○ 체육시설물 등 |
| 4. 그 밖에 중구 예산으로 구입 설치한 조형물 등 공공시설물이나, 심의회에서 심의 인정한 공공용 시설물 등 | |

[별지 제1호서식]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 연번 | 접 수 내 용 | | | | | | | | 처 리 내 용 | | | | | | |
|----|-------------|----|----------|-----|----|----|----|-----|----------|----|----------|----------|----|----------|-----|
| | 일자 (시/분) | 장소 | 신고 내용 | 신고인 | | | | 접수자 | 구분 | 일시 | 시설상태 | | | 조치 내용 | 처리자 |
| | | | | 성명 | 주소 | 전화 | 비고 | | | | 시설 종류 | 고장 유형 | 상태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확인 일시 | | | | | | |
| | | | | | | | | | 보수 일시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확인 일시 | | | | | | |
| | | | | | | | | | 보수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확인 일시 | | | | | | |
| | | | | | | | | | 보수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확인 일시 | | | | | | |
| | | | | | | | | | 보수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서

| 연번 | 신고 일자 | 신고인 | | | | 조치 결과 | | 포상금 지급 | | | |
|----|----------|-----|----|------------|-----|----------|----|----------|------------|----|------|
| |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 번호 | 연락처 | 조치 일자 | 내용 | 지급 일자 | 사유 (간수) | 금액 |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210×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